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제 1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09가합3151 손해배상(기)
		2009가합3922(병합) 손해배상(기)
		2009가합4314(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	별지 피고명단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13. 10. 28.
판	결	선 고 2013. 11. 29.

### 주 문

1. 별지 손해배상금목록 중 "분류"란 A, B, C, D 중 같은 분류의 "피고"란 기재의 각 피고는 각자 같은 분류의 "원고"란 기재의 각 원고에게 같은 분류의 "인용금액"란 기재의 원고별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손해배상금목록 중 "분류"란 A1, A2, A3 중 같은 분류의 "피고"란 기재의 각 피고는 같은 분류의 "피고"란 기재의 다른 피고들 및 같은 목록 중 "분류란" A 중



"피고란" 기재의 피고들과 각자, 같은 분류의 "원고"란 기재의 각 원고에게 같은 분류의 "인용금액"란 기재의 원고별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청구를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1. 대한민국과 별지 손해배상금목록 중 "분류"란 A의 "피고"란 기재의 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1. 대한민국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1. 대한민국과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1.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1.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1. 대한민국에게 금 1,461,616,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6.부터 2012. 3. 9.자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1.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위자료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9. 8.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 및 조직형태 변경의 결의

1) 원고2. A 내지 122. B은 2009. 5. 22. 무렵 점거파업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점거파업 당시 경찰공무원 내지 전투경찰순경이었다.

2) D조합 C지부(이하 'E지부'라고 한다)는 C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점거파업 종료 이후인 2009. 9. 8. 조합원 총회에서 피고3. D조합(이하 '피고3. D노조'라고만 한다) 탈퇴(조직형태 변경)를 결의하고, 그 무렵 명칭을 "C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3. D조합 C지부(이하 'C지부'라고 한다)는 2009. 9. 8. 이후 E지부의 조합원들 중 소수의 정리해고된 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4) 피고4. F 내지 37. G은 점거파업 당시 E지부의 지부장 내지 문화체육부장으로 서 집행부의 임원이면서, 위 점거파업에 대한 결정 및 집행을 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중앙쟁대위'라 한다)의 위원이었다.

5) 피고38. H 내지 60. I는 당시 피고3. D노조의 집행부의 구성원이었다.

6) 피고63. J은 당시 E지부의 조합원이면서 선봉대장으로서 점거파업기간 중 선봉대원들을 지휘하여 각종 집회의 선두에 서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C 임직원 및 경찰들과 대치하는 등 폭력행위를 주도하였다.

7) 피고97. K은 당시 피고3. D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으로서 C의 점거파업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8) 피고61. L 내지 피고104. M(피고63., 97. 제외)은 E지부의 일반조합원 또는 제3



자로서 점거파업 또는 시위 등과 관련한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나. 점거파업(별지 손해배상금목록 중 "분류"란 A(A1, A2, A3 포함))

1) E지부는 2009. 5. 22.부터 C의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였고, 2009. 5. 26.경부터 2009. 8. 6.경까지 동안에 약 900여 명의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 발사용 새총 등을 제작, 소지하면서 C 평택공장을 전면·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방법으로 점거파업을 하였다(이하 '점거파업'이라 한다).

2) E지부는 2009. 6. 26.경 C 직원들이 점거파업 참가자들의 1차 방어선을 뚫고 평택공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자, 군사조직을 모방하는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거파업을 계속 하였다.

3) 원고1. 대한민국은 2009. 8. 4., 같은 달 5. 점거파업의 진압작전을 시행하였다. 한편, E지부와 C회사는 2009. 8. 6. 노사합의를 하였고, 그 무렵 점거파업은 종료되었다.

4) 별지 손해배상금목록 중 "분류"란 A(A1, A2, A3 포함) 중 "원고"란 기재의 각 원고(이하, 별지 손해배상금목록 중 "분류"란 A 중 "원고란" 기재의 각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A'라고 하고, 같은 "분류"란 A(대)-2(소) 중 "원고란" 기재의 각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A-2'라고 하고, 같은 방법으로 '원고A1-2', '원고A2-2', '원고A3-2', '원고B-2', '원고C-2', '원고D-2', '원고E', '피고A', '피고A1', '피고A2', '피고A3', '피고B', '피고C', '피고D'라고 한다)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점거파업의 농성자가 벽돌 및 화염병을 투척하고 새총으로 볼트나 너트를 발사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1. 대한민국이 위 상해 치료비를 부담하였다.



5) 또한, 원고1. 대한민국은 별지 제2 내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점거파업의 농성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차량, 채증카메라, 휴대용무전기 등이 손상되거나 탈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6) 원고1. 대한민국은 2009. 8. 4. 별지 제5 목록 기재와 같이 점거파업의 참가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진압작전에 투입된 헬기 3대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7) 원고1. 대한민국은 2009. 8. 4. 소외 주식회사 중앙크레인으로부터 별지 제6 목록 기재의 기중기 3대를 임차하여, 2009. 8. 5. 진압작전에 투입하였는데, 위 기중기 3대가 점거파업의 농성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손상되었다. 소외 주식회사 중앙크레인은 원고1.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기중기의 수리비, 휴업손해 등을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1691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1. 대한민국이 항소하였으며, 원고1. 대한민국은 2011. 11. 24. 그 항소심에서 '원고1. 대한민국은 소외 주식회사 중앙크레인에게 금 743,010,332원(= (기존수리비 87,480,181원 + 향휴수리비 607,866,934원 + 휴업손해 233,415,800원) × 원고1. 대한민국의 책임비율 80%)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일부연대(별지 손해배상금목록 중 "분류"란 A1, A2, A3)

1) 피고 64. N, 66. O, 74. P 내지 79. Q(피고A1)은 약 100여명의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점거파업 중인 2009. 8. 5. C 공장 옥상 등에서 위 옥상으로 진입하려는 경찰관인 원고53. R, 54. S(원고A1-2)을 폭행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1. 대한민국이 위 상해 치료비를 부담하였다.

2) 피고 86. T(피고A2)는 점거파업의 농성자들과 함께, 2009. 8. 4. C 평택공장 옥



상으로 진입하려는 경찰관인 원고39. U, 44. V(원고A2-2)를 폭행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1. 대한민국이 위 상해 치료비를 부담하였다.

3) 피고 89. W(피고A3)은 약 100명의 점거파업의 농성자들과 공모하여 2009. 7. 22. C 평택공장에서 점거파업의 농성자들의 폭력행위 등 범죄의 예방을 위해 경계근무 중인 경찰관 원고 5. X, 9. Y 내지 15. Z, 84. AA 내지 88. AB(원고A3-2)을 폭행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1. 대한민국이 위 상해 치료비를 부담하였다.

라. 제1집회·시위(별지 손해배상금목록 중 "분류"란 B)

1) 한편, 피고2. AC연맹(이하 'AC노총'이라 한다)은 2009. 7. 25. 'C 정리해고 반대, 분사저지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2. AC노총 회원 약 4,000여 명은 그 당시 평택역에서부터 평택경찰서, 통복시장, 부영아파트, 법원사거리, 삼익아파트까지 방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였다(이하 '제1집회·시위'라고 한다).

2) 피고 92. AD 내지 95. AE(피고B 중 피고2. AC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는 그 당시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집회·시위에 참가하여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써 보도블록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원고 23. AF 내지 26. AG, 92. AH(원고B-2)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1. 대한민국이 위 상해 치료비를 부담하였다.

마. 제2집회·시위(별지 손해배상금목록 중 "분류"란 C)

1) 한편, 피고3. D노조는 2009. 7. 16. C 평택공장 정문 앞 삼거리 도로에서 E지부



의 점거파업을 동조·지원하기 위하여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이하 '제2집회·시위'라고 한다).

2) 피고 98. AI, 99. AJ(피고C 중 피고3. D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그 당시 집단적인 폭행,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참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방석모 및 돌맹이를 던지는 방법으로 불법집회 참가자 체포 등의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전투경찰 원고 78. AK(원고C-2)을 폭행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1. 대한민국이 위 상해 치료비를 부담하였다.

바. 개별행위(별지 손해배상금목록 중 "분류"란 D)

1) 2009. 8. 4. C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C 사측 임직원들이 피고2. AC노총 등에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려 한 것을 계기로 양측이 몸싸움을 하여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폭력사태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양측 사람들을 분리하고 차도에 있던 사람들을 보도로 유도하였다.

2) 피고46. AL(피고D)은 그 당시 호루라기를 불며 차도에 있던 사람들을 보도로 유도하던 전투경찰순경인 원고97. AM(원고D-2)에게 다가가 폭행을 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1. 대한민국이 위 상해 치료비를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1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등

가. 피고들은 공동(교사·방조 포함)하여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1. 대한민국은 별지 제1 내지 6 목록 중



"주장된 손해"란 기재와 같이 경찰관 상해로 인한 치료비 지출, 재물 손상 등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1.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경찰으로서 별지 제1 목록 중 "주장된 손해"란 기재와 같이 신체의 상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나. 또는 피고들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피고1. C지부 내지 3. D노조는 소속 조합원들 내지 간부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1.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금 1,461,616,842원(= 별지 제1목록 중 "주장된 손해"란 기재의 경찰 치료비 소계 16,430,640원 (경찰공무원 7,584,890원 + 전투경찰순경 등 8,845,750원) + 별지 제2목록 중 "주장된 손해"란 기재의 차량 수리비 소계 1,236,000원 + 별지 제3목록 중 "주장된 손해"란 기재의 방석모 등 수리비 소계 6,035,520원 + 별지 제4목록 중 "주장된 손해"란 기재의 휴대용무전기 등 피해비용 소계 10,431,620원 + 별지 제5목록 중 "주장된 손해"란 기재의 헬기 수리비 소계 684,472,730원 + 별지 제6목록 중 "주장된 손해"란 기재의 기중기 수리비 등 소계 743,010,332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불법행위일인 2009. 8.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1.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위자료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해당 금액(위자료) 및 이에 대한 최종 불법행위일인 2009. 8.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먼저 원고들의 피고들 전체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전체로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다만, 원고들의 피고들 전체 공동불법행위 주장 중에는 피고들 중 일부의 공동불법행위 내지 개별불법행위의 주장도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하, 점거과업, 제1집회·시위, 제2집





회·시위 중 경찰 부상, 재물 손상 등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 등, 피고46. AL의 개별 불법행위로 나누어 살펴본다.

### 3. 점거파업 부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32835 판결 참조),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



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참조). 다만, 파업은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즉 정의행위의 일종일 뿐이므로, 경찰 부상, 재물 손상 등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을 통상적으로는 내포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파업 과정에서의 경찰 부상, 재물 손상 등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sup>1)</sup> 소정의 공동불법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1) 먼저, 인용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내지 8,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지부는 창원지회 소속 조합원 약 560명과 정비지회 소속 조합원 약 280명을 포함한 약 5,2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 갈음하여 각 선거구별로 조합원 약 50여 명 중 1명씩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각종 의사결정을 하였고, 노조 집행부는 임원급으로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의 4명, 실장급으로 조직쟁의실장, 정책기획실장, 노동안전실장, 후생복지실장, 교육선전실장, 대외협력실장, 재정총무실장의 7명, 그리고 각 실 산

1)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하 부장 22명 합계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임원, 실장 및 부장은 '노조전임자' 또는 '시간할애자'로서 노조 활동만을 전담하면서 통상 상임집행부 또는 상집간부로 불렸고, 이와 별도로 C 창원공장에 창원지회와 정비직 직원들로 구성된 정비지회를 각각 두고 있었던 점, ② 한편, 사측과 쟁의가 발생하면 쟁의행위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집행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 중앙쟁대위가 구성되는데, E지부는 2009. 4. 9.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노조 집행부 33명과 평택공장 대표대의원 7명, 창원지회의 지회장과 대표대의원 각 1명, 정비지회의 지회장과 대표대의원 각 1명 합계 44명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중앙쟁대위를 구성하고 향후 모든 파업일정 및 방법을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쟁대위는 점거파업 기간 중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는 중앙쟁대위 구성원 전원 또는 대다수가 참석하였으며, 파업과 관련한 모든 지침이나 지시는 중앙쟁대위의 결정에 따라 중앙쟁대위 위원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전달되는 등의 방법으로 점거파업을 주도하였고, 피고A(피고3. D노조, 63. J, 97. K 제외)는 E지부의 집행부 임원 및 중앙쟁대위 위원으로서 중앙쟁대위의 결정에 참여하고 결정된 파업계획을 집행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파업을 주도한 점, ③ 중앙쟁대위는 2009. 5. 하순경 회의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새총 및 쇠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게 할 것을 결정하였고, 피고 4. F은 E지부의 지부장으로서 2009. 6. 중순 상집간부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C 임직원이나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그 뒤에 조합원들을 배치하며 이후 밀리게 되면 지게차를 동원하여 대응하기로 하는 등의 전술을 논의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중앙쟁대위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술훈련을 실시하였던 점, ④ 이러한 폭력적인 점거파업으로 인하여 원고1. 대한민국 및 원고A-2



는 점거파업기간 중인 2009. 6. 23.부터 2009. 8. 5.까지 사이에 C 평택공장 부근에서 점거파업의 참가자 일부에 의하여 위 기초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거나, 재물이 손상, 피탈되는 손해를 입었던 점, ⑤ 한편, 피고63. J은 선봉대장으로서 점거파업기간 중 선봉대원들을 지휘하여 각종 집회의 선두에 서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C 임직원 및 경찰들과 대치하는 등 폭력행위를 주도하였고, 중앙쟁대위 위원은 아니나 중앙쟁대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그 회의내용이나 집행부의 지침 등을 선봉대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⑥ 피고97. K은 피고3. D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으로 C의 점거파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중, C 노조 집행부가 점거파업투쟁 전술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투쟁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현재 파업 상황 및 주변 정세, 피고3. D노조 중앙의 입장을 전달하고 투쟁전술에 대한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특히 피고97. K은 점거파업기간 동안 C 공장에 상주하면서, 중앙쟁대위, 전술기획팀 회의, 상집간부회의에 수차례 참관하였고, 파업에 참여한 인원의 규모나 과열된 당시의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집단적인 점거파업 과정에서 표출될 조합원들의 과격한 행동, 진압을 위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행, 상해행위가 뒤따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공권력 투입에 따른 가상 시나리오 및 대응 전략 등을 E지부의 집행부와 논의하고, 점거파업의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병력의 진입에 대비하여 방어벽을 설치하고, 도장2공장 옥상에서 선무방송을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 ⑦ 피고3. D노조는 당시 피고97. K의 사용자였으며, 또한 그 위원장인 피고38. H을 포함한 간부들은 점거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갑 제14호증의 7, 다만, 상고심 계속 증으로 위 유죄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을 보태어 보면, 피



고A(피고3. D노조 제외)는 공동하여 점거파업 중 공무집행방해과정에서 원고1. 대한민국 및 원고A-2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경찰 부상, 재물 손상, 재물 피탈의 손해 또는 상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A는 각자 원고1. 대한민국에게 위 손해 중 경찰 부상, 재물 손상, 재물 피탈 부분을, 원고A-2의 각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3. D노조는 피고97. K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기각부분(원고들의 청구 중 점거파업과 관련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아래 4.항기재의 원고A1, A2, A3의 피고A1, A2, A3에 대한 청구, 원고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들의 피고F에 대한 청구 각 제외))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8,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점거파업도 일종의 집회·시위에 해당하나, 파업 자체는 사용자에 대한 업무집행방해행위와 직접 관련되어 있을 뿐, 경찰 부상, 재물 손상 등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을 통상적으로는 내포하지 않는 점, ② 점거파업은 2009. 5. 26.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원고72. AN은 2009. 6. 23. 사측과 노조 측의 충돌을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것을 비롯하여 점거파업 초기에는 경계근무를 하던 경찰이 산발적으로 상해를 입었고, 점거파업 말기의 경찰의 진압작전 당시 경찰 다수가 상해를 입었던 점, ③ 점거파업의 참가자들은 약 900여명이고, C에 대항하여 C 평택공장을 점거하게 되었던 점, ④ 위 피고들이 단순 참가자 또는 점거파업에 대한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점거파업 중 경찰에 대한 중앙쟁대위의 공격적 입장을 알고 있었고 이에 동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⑤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경찰 부상, 재물 손상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직접적 실행행위자를 이용하거나 직



접적 실행행위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⑥ 또한 위 피고들은 점거과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하지는 않았으며, 위 피고들은 다른 참가자의 경찰에 대한 폭행, 손괴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질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⑦ 피고1. C지부, 피고2. AC노총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위 원고들의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점거과업 중 일부연대책임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가. 먼저 인용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특히 위 기초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A1의 각 피고는 나머지 피고A1의 피고들 및 피고A와 각자 원고1. 대한민국에게 경찰 부상 부분을, 원고A1-2의 각 원고에게 상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A2의 피고(피고86. T)는 피고A와 각자 원고1. 대한민국에게 경찰 부상 부분을, 원고A2-2의 각 원고에게 상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A3의 피고(피고89. W)는 피고A와 각자 원고1. 대한민국에게 경찰 부상 부분을, 원고A3-2의 각 원고에게 상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기각부분(원고들의 청구 중 점거과업과 관련한 원고A1, A2, A3의 피고A1, A2, A3에 대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3의 나.2)항에 기재된 사정들(피고A1, A2, A3 추가)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A1, A2, A3가 해당 개별행위를 넘어서 점거과업 중 공



무집행방해과정에서의 다른 경찰상해, 재물 손상 등에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A1, A2, A3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② 피고A1, A2, A3는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점거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하지는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제1집회·시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먼저 인용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제16조 제1항), 집회참가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제18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제16조 3항). 그런데, 위 인정사실(위 기초사실 제1의 라.항)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2. AC노총은 제1집회·시위의 주최자임에도, 집회참가자 피고B(피고2. AC노총 제외)의 폭력행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위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써 보도블록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인 원고B-2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각자 위 상해 치료비를 부담한 원고1. 대한민국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B-2에게 상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기각부분(원고들의 청구 중 제1집회·시위와 관련한, 원고들의 피고들



에 대한 나머지 청구(원고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들의 피고F에 대한 청구 각 제외))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2 내지 25, 91, 갑 제10호증의 30, 31, 3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2. AC노총 주최의 제1집회·시위와 E지부 주최의 점거파업은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2. AC노총 주최의 제1집회·시위만으로 피고2. AC노총이 E지부와 사이에 점거파업 중 경찰 부상, 재물 손상 등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교사·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피고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위 제1집회·시위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 제2집회·시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

가. 먼저 인용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위 기초사실 제1의 마.항)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3. D노조는 제2집회·시위의 주최자임에도, 집회참가자 피고C(피고3. D노조 제외)의 폭력행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위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방석모 및 돌멩이를 던지는 방법으로 경찰 원고78. AK(원고C-2)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각자 위 상해 치료비를 부담한 원고1. 대한민국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C-2에게 상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기각부분(원고들의 청구 중 제2집회·시위와 관련한, 원고들의 피고들





에 대한 나머지 청구(원고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들의 피고F에 대한 청구 각 제외))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77, 갑 제10호증의 15,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3. D노조 주최의 제2집회·시위와 E지부 주최의 점거파업은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인 점, ② 피고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위 제2집회·시위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7. 개별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먼저 인용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위 기초사실 제1의 바.항)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46. AL(피고D)은 그 당시 경찰인 원고97. AM(원고D-2)를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위 상해 치료비를 부담한 원고1. 대한민국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는 원고D에게 상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기각부분(원고들의 청구 중 개별행위와 관련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원고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들의 피고F에 대한 청구 각 제외))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96, 갑 제10호증의 3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46. AL의 위 2009. 8. 4.자 상해행위가 C 사측과 노조측 양측이 충돌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46. AL의 위 상해행위가 E지부 주최의 점거파업, 피고2. AC노총 주최의 제1집회·시위 또는 피고3. D노조 주최의 제2집회·시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그 과정에서 일어



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피고46.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46. AL의 위 상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을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8.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원고1. 대한민국의 손해액과 관련하여 별지 제1 내지 6 목록 중 "주장된 손해액" 기재의 위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고, 아울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상경위", "부상내용", "인정된 치료비" 등과 관련하여 손해발생책임의 발생이 인정되는 위 원고A-2, A1-2, A2-2, A3-2, B, C, D의 손해액, 즉 위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의 손해 및 위자료

갑 제1,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점거파업 중 폭력 행위, 제1집회·시위 중 폭력행위, 제2집회·시위 중 폭력행위, 피고46. AL의 폭력행위로 인한 경찰 부상에 관하여 원고1. 대한민국이 별지 제1목록 중 "인정된 치료비"란 기재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E와 관련한 치료비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24. AO, 34. AP, 46. AQ, 84. AA, 94. AR, 95. AS, 96. AT, 100. AU, 101. AV, 122. B에 관련한 원고1. 대한민국의 치료비 손해주장은 진료비 계산서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1. 대한민국은 별지 제1목록 중 "인정된 치료비"란 기재의 치료비 중 원고 A-2와 관련하여 13,794,650원(그 중 원고A1-2와 관련하여 399,740원, 원고A2-2와 관련하여 487,290원, 원고A3-2와 관련하여 922,340원), 원고B-2와 관련하여 437,490원



을, 원고C-2와 관련하여 85,190원을, 원고D-2와 관련하여 85,000원 상당의 손해, 합계 14,402,330원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A, B, C, D(원고1. 대한민국 제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의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의 사정, 형평성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별지 위자료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해당 금액으로 각 정한다(원고 25. AW, 27. AX, 62. AY의 경우에 각 치료비에 대한 증거는 없으나, 소견서 등으로 부상사실은 인정되므로, 각 위자료를 인정한다).

#### 나. 별지 제2 내지 4 목록 기재의 손해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점거파업 중 폭력행위로 인한 재물 손상 등에 관하여 원고1. 대한민국이 별지 제2 내지 4목록 중 "인정된 손해액"란 기재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별지 제2목록(차량피해현황), 별지 제3목록(진압장등비등)과 관련한 원고1. 대한민국의 손해주장은 견적서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인정한다. 그리고, 별지 제4목록(휴대용무전기 피해현황) 중 연번1 내지 4, 13 내지 15의 휴대용무전기 등의 피해가 피고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연번 6, 7의 피해는 그 손해범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연번 5, 8 내지 12의 피해는 위 휴대용무전기 등이 상당기간 사용된 것임을 고려하여 감가액으로 그 취득원가의 50%를 적용하여 그 손해액을 인정한다).

#### 다. 별지 제5목록 기재의 손해

- 1)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를



하여 그 복원된 기계·기구의 가액이 손상 이전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감가액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신규의 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기계·기구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공제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유아이헬리콥터, 주식회사 LG상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 대한민국은 2009. 8. 4. 점거파업의 진압작전을 위해 헬기 3대(MI-172, Bell-412(952호), Bell412(957호))를 투입하였다가 점거파업의 농성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헬기 3대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 원고1. 대한민국은 2009. 8.경 주식회사 LG상사에 헬기 1대(MI-172)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 수리비(주날개와 꼬리날개 교환)로 490,715,720원을 부담한 사실, 원고1. 대한민국은 2009. 8.경 주식회사 유아이헬리콥터에 헬기 2대(Bell-412(952호), Bell412(957호))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 수리비 등으로 123,587,998원{(Bell-412(952호)}, 70,169,012원{Bell412(957호)}을 부담한 사실, 헬기 Bell-412(952호)의 수리비(갑 제12호증의 1 중 인천952호 2009. 12. 14.자 인보이스)에는 순번3. 벨412 SWASH PLATE 및 SUPPORT ASB 412-08-31 수행비용으로 2,825,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헬기 Bell-412(957호)의 수리비(갑 제12호증의 1 중 경기957호 2009. 12. 14.자 인보이스)에는 순번2 M/R BLADE INSPECTION 4,229,600원, 순번 3. BLADE 해외수리용 및 반출/반입비용(A-2434, A-2440) 63,114,412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1. 대한민국은 부품교환 방법 등으로 위 헬기 3대를 수리하였고, 위 부품은 주날개, 꼬리날개, 조정석 유리로서 헬기의 일부 부품에 불과하고, 위 부품이 헬기의 가격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리 후 헬기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주식회사 유아이헬리콥터, 주식회사 LG상사가 헬기 3대를 적절히 수리하였다고 보일 뿐, 당시 과잉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다만, 헬기 Bell-412(952호)의 수리비 중 벨412 SWASH PLATE 및 SUPPORT ASB 412-08-31 수행비용 2,825,000원이 점거과업으로 인한 손상 수리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⑤ 헬기 Bell-412(957호)는 2009. 8. 4. 주식회사 유아이헬리콥터 공장에 입고되어 수리받았고, 2009. 8. 5.경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2009. 8. 17.경 추가 손상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수리를 받았으며, 헬기 Bell-412(957호)의 수리비 중 순번2 M/R BLADE INSPECTION 4,229,600원, 순번 3. BLADE 해외수리용 및 반출/반입비용(A-2434, A-2440) 63,114,412원은 추가 수리비인데, 위 추가 수리비가 점거과업으로 인한 손상 수리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1. 대한민국은 2009. 8. 4. 점거과업의 농성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손상된 헬기 3대 수리비 614,303,718원(= M1-172 수리비 490,715,720원 + Bell-412(952호) 수리비 120,762,998원(123,587,998원 - 2,825,000원) + Bell-412(957호) 수리비 2,825,000원(70,169,012원 - 4,229,600원 - 63,114,412원))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별지 제6목록 기재의 손해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참조). 그리고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852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특히 위 기초사실 제1의 나.7)항)에 갑 제6, 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1. 대한민국은 2009. 8. 4. 소외 주식회사 중앙크레인으로부터 기중기 3대를 임차하여, 2009. 8. 5. 진압작전에 투입하였는데, 위 기중기 3대가 점거파업의 농성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손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1. 대한민국은 소외 주식회사 중앙크레인에 대하여 수리비, 휴업손해 상당의 약정금 743,010,332원을 부담하게 된 점(원고1. 대한민국이 위 약정금 상당의 금액을 지출하거나 할 것으로 보인다), ② 점거파업의 위 농성자도 기중기 3대의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기중기 3대의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 휴업손해 743,010,332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1. 대한민국이 기중기 3대의 임차권자로서 위 농성자의 불법행위로 기중기 3대의 사용에 방해를 받았고, 주식회사 중앙크레인에 대하여 기중기 3대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약정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한편, 점거파업의 위 농성자 등 피고A는 주식회사 중앙크레인 측으로부터 별다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1. 대한민국은 점거파업의 위 농성자 등 피고A에 대하여 기중기 3대의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 휴업손해 상당의 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중 해당 피고는 일부 피고들과 각자 원고들 중 해당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해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A는 각자 원고A의 각 원고에게 별지 손해배상금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원고별 해당금액(원고1.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374,290,690원 = 별지 제1 목록과 관련한 손해액 13,794,650원 + 별지 제2 목록과 관련한 손해액 659,000원 + 별지 제3 목록과 관련한 손해액 329,000원+ 별지 제4 목록과 관련한 손해액 2,193,990원 + 별지 제5 목록과 관련한 손해액 614,303,718원 + 별지 제6 목록과 관련한 손해액 743,010,332원,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해당 위자료), 피고B는 각자 원고B의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원고별 해당금액(원고1.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437,490원(별지 제1 목록과 관련한 손해액),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해당 위자료), 피고C는 각자 원고C의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원고별 해당금액(원고1.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85,190원(별지 제1 목록과 관련한 손해액), 나머지 원고의 경우에는 각 해당 위자료), 피고D는 원고D의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원고별 해당금액(원고1.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85,000원(별지 제1 목록과 관련한 손해액), 나머지 원고의 경우에는 각 해당 위자료)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09. 8. 6.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A1은 나머지 피고A1 및 피고A와 각자 원고A1의 각 원고에게 별지 손해배상금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원고별 해당금액(원고1.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399,740원(별지 제1 목록과 관련한 손해액), 나머지 원고의 경우에는 각 해당 위자료), 피고A2(피고86. T)는 피고A와 각자 원고A2의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원고별 해당금액 {원고1.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487,290원(별지 제1 목록과 관련한 손해액), 나머지 원고의 경우에는 각 해당 위자료}, 피고A3(피고89. W)는 피고A와 각자 원고A3의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원고별 해당금액(원고1.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922,340원(별지 제1 목록과 관련한 손해액), 나머지 원고의 경우에는 각 해당 위자료)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09. 8. 6.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9. 피고들<sup>2)</sup>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① 피고6. AZ는 2009. 6. 22.부터, 피고22. BA은 2009. 6. 25.부터 점거파업에 각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적어도 위 각 일자이후부터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② 피고34. BB은 2009. 6. 23.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2009. 12. 10.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을 뿐이므로, 위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2) 제9항에서의 "피고들"은 정확히는 피고들 중 위 제2 내지 8항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피고들이지만, 편의상 피고들이라고 한다.





③ 원고1. 대한민국은 헬기의 손상된 부분을 부품교환 방법 등으로 수리받으면서, 기존 부품을 반환받았으므로, 기존 부품 상당의 이익은 그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④ 점거파업 당시 경찰은 점거파업에 대응하여 의약품, 식료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C의 공장을 봉쇄하였고, 또한 이후 경찰은 최루액, 고무총, 권총형 전기충격기(테이저건) 등으로 과잉폭력진압을 하였으며, 경찰은 C 사측의 조직적 폭력을 비호하는 등 사측과 공동작전을 하기도 한 점, C는 당시 잘못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경영위기 책임을 전가하는 대규모 인원의 정리해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E지부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점거파업에 이르게 된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원고들의 과실이 참작되거나, 해당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⑤ 원고1. 대한민국의 별지 제6 목록(기중기 피해 현황)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6. AZ, 피고22. BA, 피고34. BB의 위 ①,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들은 E지부의 집행부 임원 및 중앙쟁대위 위원으로서 중앙쟁대위의 결정에 참여하고 결정된 파업계획을 집행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파업을 주도한 점(다만, 피고22. BA은 2009. 7. 하순경 노동안전실장에서 해임되었으나,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 ② 중앙쟁대위는 2009. 5. 하순경 회의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새총 및 쇠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게 할 것을 결정하였고, 피고4. F은 E지부의 지부장으로서 2009. 6. 중순 상집간부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C 임직원이나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그 뒤에 조합원들을 배치하며 이후 밀리게 되



면 지게차를 동원하여 대응하기로 하는 등의 전술을 논의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중앙쟁대위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술훈련을 실시하였던 점, ③ E지부는 2009. 5. 22.부터 C의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였고, 2009. 5. 26.경부터 2009. 8. 6.경까지 동안에 약 900여 명의 점거파업 참가자들이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 발사용 새총 등을 제작, 소지하면서 C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방법으로 점거파업을 하였던 점, ④ 그럼에도 위 피고들이 경찰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찰 부상, 재물 손상 등의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위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피고들이 점거파업 중 경찰 부상, 재물 손상 등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들의 위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1. 대한민국이 취득하였다는 기존 부품 상당의 이익액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피고들의 위 ④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1. 대한민국의 청구, 특히 점거파업과 관련한 청구를 중심으로 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살펴본다(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자료 청구이다).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



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참조). 폭력이나 손괴 사태가 예상됨에도 집회주최자 등으로서 부담하는 질서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하나의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설령 집회주최자 등의 집회질서유지에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 안에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집회주최자 등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이상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당해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그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683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4호증의 각 기재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의 위 주장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즉 원고들이 자신들의 상해, 재물 손괴 또는 점거파업의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그 치료비, 수리비 등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한편, 점거파업은 C의 구조조정 추진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목적상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E지부는 평택공장 정문 등 출입구를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봉쇄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선봉대원들로 하여금 공장 관리자 등의 출입을 통제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발사용 새총 및 쇠파이프, 방패 등을 제작, 소지하면서 전면적인 공장을 점거함으로써 C의 시설관리권을 완전히 배제한 점, ③ E지부는 집단적인 점거파업 과정에서 표출될 조합원들의 과격한 행동, 진압을 위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행, 상해행위가 뒤따를 것을 충



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공권력 투입에 따른 가상 시나리오 및 대응 전략 등을 계획하고, 경찰병력의 진입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전술훈련을 실시하였던 점, ④ 위와 같이 E지부는 당시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경찰에 대한 공격적인 행위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 피고들의 위 주장사정과 같은 상황에서 E지부가 긴급히 불가피하게 경찰에 폭력행위를 하는 등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구체적인 경찰 부상, 재물 손상 등의 경우에도 피고들의 위 주장사정이 별지 제1 내지 6 목록 기재의 경찰 부상, 재물 손상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해당 피고들이 공동하여 당시 경계근무를 서거나, 진압작전을 하는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찰 부상, 재물 손상 등에 관하여 원고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의 위 주장사정이 경찰 부상, 재물 손상 등에 관한 손해공평부담의 원칙에 기한 피고들의 책임제한 사유로 적합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피고들의 위 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0. 원고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F에 대한 청구 부분

#### 가. 원고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살펴 보건대, 갑 제1호증의 73, 76, 92, 97,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들의 행위와 위 원고들(원고74. BC, 77. BD, 93. BE, 98. BF)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원고들의 피고F에 대한 청구

##### 1) 원고들의 피고F 중 피고1. C지부에 대한 청구

을 제51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지부가 점거파업을 주도한 점, ② E지부는 점거파업 이후인 2009. 9. 8. 조합원 총회에서 피고3. D노조 탈퇴(조직형태 변경)를 결의한 점, ③ E지부는, 그 무렵 명칭을 "C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고, 그 무렵 집행부의 임원 선거를 하여 집행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1. C지부는 2009. 9. 8. 이후 E부의 조합원들 중 소수의 정리해고된 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1. C지부가 E지부와 동일성이 있는 단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 기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원고들의 피고F(피고1. C지부 제외)에 대한 청구

위 제3의 나.2)항에 기재된 사정들(피고F 추가)에, 갑 제1 내지 8,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F 중 피고38. H 내지 피고60. I는 피고2. D노조의 간부로서 점거파업과 관련하여 C에 대한 업무방해방조 또는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기도 하였지만(피고50. BG 제외), 위 피고들이 점거파업의 방조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방조행위만으로 점거파업 등의 과정에서 경찰상해, 재물 손상 등에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F 중 나머



지 피고들은 E지부의 일반조합원 또는 제3자에 불과하여, 점거파업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점거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96. BH은 당시 휴학생으로서 2009. 8. 5. C 평택공장 앞에서 천막 농성중인 BI당 당직자들을 만나러 갔다가 평택공장 정문 앞 천막을 철거하려는 C 직원들과 충돌하였고, 다른 시위대와 함께 2009. 8. 5. 평택시 비전동 소재의 평택경찰서로 몰려가 당일 오전에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100. BJ은 당시 BK노조대의원으로서 2009. 7. 16. 제2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 ③ 피고F가 점거파업 이외에 제1 집회·시위, 제2 집회·시위 등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1. 결론

그렇다면, 원고1. 대한민국 및 원고 A-2(A1-2, A2-2, A2-3 포함), B-2, C-2, D-2의 피고A, B,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인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판사 이성은

판사 공성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 원고명단

(원고 명단 삭제)

## 피고명단

(피고 명단 삭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 손해배상금목록

분류		원고	피고	인용금액(단위:원)
대	소			
A 점거파업	1	원고1. 대한민국	피고3. D조합 피고4. F 내지 37. G 피고63. J 피고97. K	1,374,290,690
	2	원고1. 대한민국, 23. AF 내지 26. AG, 74. BC, 77. BD, 78. AK, 92. AH, 93. BE, 97. AM, 98. BF(즉 분류란 중 B, C, D, E 기재의 각 원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별지 위자료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원고별 해당 금액
A1 일부연대	1	원고1 대한민국	피고64. N 피고66. O 피고74. P 내지 79. Q	399,740
	2	원고53. R 원고54. S		별지 위자료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원고별 해당 금액
A2 일부연대	1	원고1. 대한민국	피고86. T	487,290
	2	원고39. U 원고44. V		별지 위자료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원고별 해당 금액
A3 일부연대	1	원고1. 대한민국	피고89. W	922,340
	2	원고5. X 원고9. Y 내지 15.Z 원고84. AA 내지 88. AB		별지 위자료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원고별 해당 금액
B 제1집회·시위	1	원고1. 대한민국	피고2. AC연맹 피고92. AD 피고93. BL 피고94. BM 피고95. AE	437,490
	2	원고23. AF 원고24. AO 원고25. AW 원고26. AG 원고92. AH		별지 위자료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원고별 해당 금액
C 제2집회·시위	1	원고1. 대한민국	피고3. D조합 피고98. AI 피고99. AJ	85,190
	2	원고78. AK		별지 위자료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원고별 해당 금액
D 개별	1	원고1. 대한민국	피고46. AL	85,000
	2	원고97. AM		별지 위자료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의 원고별 해당 금액
E 전부기각		원고74. BC 원고77. BD 원고93. BE 원고98. BF	-	-
F 전부기각		-	피고1. D조합 C지부 피고38. H 내지 45. BN 피고47. BO 내지 62. BP 피고65. BQ 피고67. BR 내지 73. BS 피고80. BT 내지 85. BU 피고87. BV 피고88. BW 피고90. BX 피고91. BY 피고96. BZ 피고100. BJ 내지 104. M	-

※개략적으로 말하면, 각 원고는 해당 원고란의 행에 기재된 해당 피고들에 대하여 인용금액란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각 피고는 일부 피고들과 각자 해당 피고란의 행에 기재된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인용금액란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 위자료목록

(단위: 원)

원고번호	원고	청구금액	인용금액
2	A	800,000	300,000
3	CA	800,000	300,000
4	CB	800,000	300,000
5	X	15,000,000	500,000
6	CC	10,000,000	500,000
7	CD	1,200,000	300,000
8	CE	1,200,000	300,000
9	Y	800,000	300,000
10	CF	800,000	300,000
11	CG	800,000	300,000
12	CH	800,000	300,000
13	CI	800,000	300,000
14	CJ	800,000	300,000
15	Z	800,000	300,000
16	CK	10,000,000	500,000
17	CL	800,000	300,000
18	CM	800,000	300,000
19	CN	800,000	300,000
20	CO	800,000	300,000
21	CP	800,000	300,000
22	CQ	800,000	300,000
23	AF	800,000	300,000
24	AO	800,000	300,000
25	AW	800,000	300,000
26	AG	5,000,000	500,000
27	AX	2,200,000	300,000
28	CR	800,000	300,000
29	CS	800,000	30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30	CT	2,200,000	300,000
31	CU	800,000	300,000
32	CV	2,200,000	300,000
33	CW	800,000	300,000
34	AP	800,000	300,000
35	CX	800,000	300,000
36	CY	800,000	300,000
37	CZ	800,000	300,000
38	DA	1,800,000	300,000
39	U	3,600,000	500,000
40	DB	4,000,000	500,000
41	DC	5,000,000	500,000
42	DD	800,000	300,000
43	DE	800,000	300,000
44	V	800,000	300,000
45	DF	1,200,000	300,000
46	AQ	1,200,000	300,000
47	DG	2,600,000	500,000
48	DH	800,000	300,000
49	DI	800,000	300,000
50	DJ	800,000	300,000
51	DK	2,600,000	500,000
52	DL	800,000	300,000
53	R	2,200,000	300,000
54	S	2,600,000	500,000
55	DM	800,000	300,000
56	DN	800,000	300,000
57	DO	800,000	300,000
58	DP	5,000,000	500,000
59	DQ	800,000	300,000
60	DR	800,000	300,000
61	DS	800,000	30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62	AY	800,000	300,000
63	DT	800,000	300,000
64	DU	1,800,000	300,000
65	DV	800,000	300,000
66	DW	4,200,000	500,000
67	DX	2,600,000	500,000
68	BZ	2,600,000	500,000
69	DY	2,200,000	300,000
70	DZ	1,200,000	300,000
71	EA	1,800,000	300,000
72	AN	15,000,000	1,000,000
73	EB	1,200,000	300,000
74	BC	3,800,000	(청구기각)
75	EC	800,000	300,000
76	ED	800,000	300,000
77	BD	800,000	(청구기각)
78	AK	3,000,000	500,000
79	EE	800,000	300,000
80	EF	800,000	300,000
81	EG	2,200,000	300,000
82	EH	800,000	300,000
83	EI	800,000	300,000
84	AA	800,000	300,000
85	EJ	800,000	300,000
86	EK	800,000	300,000
87	EL	1,800,000	300,000
88	AB	800,000	300,000
89	EM	800,000	300,000
90	EN	800,000	300,000
91	EO	800,000	300,000
92	AH	2,200,000	300,000
93	BE	3,400,000	(청구기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94	EP	800,000	300,000
95	AS	800,000	300,000
96	AT	800,000	300,000
97	AM	800,000	300,000
98	BF	800,000	(청구기각)
99	EQ	800,000	300,000
100	AU	800,000	300,000
101	AV	800,000	300,000
102	ER	800,000	300,000
103	ES	800,000	300,000
104	ET	800,000	300,000
105	EU	1,800,000	300,000
106	EV	800,000	300,000
107	EW	800,000	300,000
108	EX	800,000	300,000
109	EY	800,000	300,000
110	EZ	800,000	300,000
111	BN	1,800,000	300,000
112	FA	3,400,000	500,000
113	FB	1,200,000	300,000
114	FC	2,200,000	500,000
115	FD	1,800,000	300,000
116	FE	800,000	300,000
117	FF	800,000	300,000
118	FG	800,000	300,000
119	FH	800,000	300,000
120	FI	1,800,000	300,000
121	FJ	1,800,000	300,000
122	B	800,000	300,000
합계		208,000,000	39,20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 제1 목록(경찰 부상)

(단위: 원)

연 번	일시	성명	부상경위	부상내용	주장된 치료비	인정된 치료비
2	09-7-20	A	시위대의 가스통 방화에 대비 상황 근무중 도장공장 옥상에서 새총으로 발사한 볼트에 목부위를 맞아 찰과상	좌쇄골 등 통성종창	13,930	13,930
3	09-7-21	CA	C 정문 주변에 근무교대중 시위대가 발사 한 볼트에 우측 쇄골을 맞아 타박상	우쇄골부 좌상 및 찰 과상 진단2 주	7,100	7,100
4	09-7-21	CB	근무를 위해 이동중 시위대가 새총을 이용 해 발사한 볼트에 왼쪽 무릎을 맞아 타박상	무릎 타 박상	22,100	22,100
5	09-7-22	X	도장 공장 앞에서 근무도중 쇠파이프 등으 로 무장한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맞아 몸 에 불을 붙여 쓰러져 몸통 2도화상, 타박상	손목, 몸 통 2도화 상, 진단 3 주	643,230	643,230
6	09-7-22	CC	도장 공장 앞에서 근무도중 쇠파이프 등으 로 무장한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맞아 몸 에 불을 붙여 쓰러져 몸통 2도화상, 타박상	손목 및 몸통, 2도 화상	302,660	302,660
7	09-7-22	CD	도장 공장 앞에서 근무도중 시위대가 기습 하여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당하고 발사한 볼트에 쇄골 부위를 맞아 타박상	뇌진탕, 좌측쇄골 부열상 진 단3주	70,700	70,700
8	09-7-22	CE	도장 공장 앞에서 근무도중 시위대가 기습 하여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새총으로 발사한 볼트가 목에 박히는 부상	뇌진탕, 좌 측경부, 심부열상 진단3주	49,000	49,000
9	09-7-22	Y	도장공장 앞에서 근무도중 쇠파이프 등으 로 무장한 시위대가 기습하여 쇠파이프 등 으로 폭행당하여 타박상	왼손, 목 찰과, 타박 상	47,390	47,390
10	09-7-22	CF	도장공장 앞에서 진압작전 중 시위대가 발 사한 볼트에 손, 어깨를 맞아 타박상	양손, 무 릎 찰과상, 좌상	11,840	11,840
11	09-7-22	CG	도장공장 앞에서 진압작전 중 시위대가 발 사한 볼트에 어깨를 맞아 타박상	왼쪽 어 깨 좌상	8,840	8,8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12	09-7-22	CH	도장공장 앞에서 진압작전 중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에 왼 손목을 맞아 타박상	손목 및 타박상	37,090	37,090
13	09-7-22	CI	도장공장 앞에서 진압작전 중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에 왼손 검지 손가락을 맞아 타박상	손가락 타박상	31,700	31,700
14	09-7-22	CJ	도장공장 앞에서 진압작전 중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와 쇠파이프 등에 목부위등을 맞아 타박상	어깨, 팔 타박상	30,100	30,100
15	09-7-22	Z	도장공장 앞에서 진압작전 중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에 목 부위 등을 맞아 타박상	팔꿈치 좌상	8,840	8,840
16	09-7-24	CK	로디우스 공장 진입작전 중 시위대가 설치해 놓은 철판 장애물에 손가락을 베이는 부상	좌수소수지 외전근파열 진단 3주	224,080	224,080
17	09-7-24	CL	로디우스 공장 진입작전 중 시위대가 설치해 놓은 철판 장애물에 손가락을 베이는 부상	좌측5수지 열상, 진단 2주	46,610	46,610
18	09-7-24	CM	로디우스 공장 진입작전 중 시위대가 설치해 놓은 철판 장애물에 손가락을 베이는 부상	좌측4수지 열상, 진단 2주	46,610	46,610
19	09-7-24	CN	시위대에 의해 발생한 화재진압을 위해 공장 내로 진입 하던중 바닥에 뿌려놓은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요추염좌	엉덩이 관절, 염좌진단 2주	34,030	34,030
20	09-7-24	CO	C 공장 내에서 근무교대중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에 우측 엄지손가락을 맞아 부상	우수지 열상, 진단 2주	63,640	63,640
21	09-7-24	CP	로디우스 옥상 공장에서 그물망을 들고 렉스턴 공장으로 진입하던 중 시위대가 던진 볼트에 맞아 왼쪽 팔목부위 타박상	좌측수근관절부좌상	73,640	73,640
22	09-7-24	CQ	로디우스 옥상 공장에서 그물망을 들고 렉스턴 공장으로 진입하던 중 시위대가 던진 볼트에 맞아 오른 손등 타박상	우수지 염좌	17,100	17,100
23	09-7-25	AF	D노조 C 지원투쟁을 진압하던중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에 우측무릎에 맞아 타박상	우측무릎 좌상	26,800	26,8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2-26

24	09-7-25	AO	AC노총의 불법시위를 진압, 시위자를 검거하여 연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에 맞아 우측발 타박상	우측발목 염좌	33,700	12,400
25	09-7-25	AW	AC노총의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대로 부터 눈을 찔려 부상	안구외상의 증	23,130	0
26	09-7-25	AG	C 지원시위대가 도로를 점거 불법시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진압작전 중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에 맞아 안면부 15바늘 포함	안면부 열창	296,990	296,990
27	09-7-27	AX	프레스 공장 옥상에서 상황진압 연습중 시위대가 새총을 이용해 발사하는 볼트를 피하던 중 넘어져 우측 발목 인대 손상	우측족관절 염좌, 진단 2주	295,500	0
28	09-7-27	CR	복지동의 점거 농성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프레스 공장 옥상에서 근무중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에 맞아 우측 무릎 타박상	우측무릎 타박상	14,400	14,400
29	09-7-28	CS	근무를 위해 이동중 도장2공장 옥상에서 새총에 의해 발사된 화염병에 맞아 왼쪽 발등, 무릎 타박상 및 발톱 2개 부상	무릎의 타박상	20,500	20,500
30	09-8-4	CT	조립공장 진입작전 중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맞아 왼쪽 종아리 2도화상	양측하지2도화상, 진단 3주	95,060	95,060
31	09-8-4	CU	조립공장 진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과 쇠파이프에 맞아 우측 무릎 타박상	우측관절 열창, 진단 2주	40,920	40,920
32	09-8-4	CV	조립공장 진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진입작전 중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와 돌에 맞아 왼쪽 팔에 금이 가는 부상	좌수 미세 골절	137,500	137,500
33	09-8-4	CW	복지동의 점거 농성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로디우스 건물 옥상에서 복지동 건물옥상으로 진입도중 보도블록, 볼트에 수회 맞아 전신타박상	전신타박	74,600	74,600
34	09-8-4	AP	복지동의 점거 농성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로디우스건물 옥상에서 복지동 건물옥상으로 진입도중 보도블록, 볼트에 수회 맞아 우측발목 포함, 전신타박상	발목열창	61,250	7,800
35	09-8-4	CX	로디우스 옥상 진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 가던 중 볼트에 오른쪽 옆구리를 맞아 타박상	우측가슴 타박상	48,100	48,100
36	09-8-4	CY	로디우스 공장옥상에서 진입작전 중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왼쪽 무릎에 맞아 타박상	좌측무릎 타박상	24,900	24,9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2-26

37	09-8-4	CZ	로디우스 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옥상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 가던중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우측 손등을 맞아 타박상	우측손등 좌상	36,500	36,500
38	09-8-4	DA	조립공장옥상진압작전중사다리를타고부품공장으로올라가던중시위대가던진자동차휠등에우측팔을맞아3바늘봉합	우측팔 열상	32,800	32,800
39	09-8-4	U	조립공장 옥상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중 시위대가 던진 자동차 휠에 안면부를 맞아 코뼈가 골절	코뼈파쇄성 골절, 진단3주	459,390	459,390
40	09-8-4	DB	렉스텐 조립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옥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다리를 세우던중 시위대가 던진 자동차 휠 등에 맞아 광대뼈 골절	광대뼈 파쇄성 골절 진단 4주	604,440	604,440
41	09-8-4	DC	복지동의 점거 농성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로디우스 건물 옥상에서 복지동 건물옥상으로 진입도중 보도블록, 볼트에 수회 맞아 견관절 파열 수술, 전치5주의 상해	견관절연골판 파열 진단 5주	380,780	380,780
42	09-8-4	DD	프레스 공장 옥상에서 복지동으로 진압작전 중 시위대로부터 폭행	요추 타박	21,300	21,300
43	09-8-4	DE	프레스 공장 옥상에서 복지동으로 진압작전 중 시위대로부터 폭행당하여 쇄골 등 타박상	쇄골타박	30,400	30,400
44	09-8-4	V	조립공장 옥상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던 중 시위대가 던진 자동차 휠, 벽돌과 볼트에 맞아 전신 타박상	다발성타박상, 진단 2주	27,900	27,900
45	09-8-4	DF	조립공장 옥상 진압작전 중 시위대들이 던진 벽돌과 볼트에 맞아 우측손가락 부상	손가락염좌, 진단 3주	3,500	3,500
46	09-8-4	AQ	렉스텐 조립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옥상으로 진압작전 중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목 부위 등을 맞아 부상	경추부염좌, 진단 3주	1,194,500	1,049,740
47	09-8-4	DG	조립공장 옥상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중 시위대가 던진 자동차 휠에 눈위 이마뼈가 골절되고 벽돌과 볼트에 수회맞아 전신 타박상	좌측안와 파열골절, 진단 4주	379,200	379,200
48	09-8-4	DH	로디우스 옥상에서 복지동 옥상으로 진입중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에 손목 관절부위를 맞아 타박상	우측슬관절염좌, 진단 2주	5,200	5,2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49	09-8-4	DI	차체공장에서 복지동건물 진입작전중 볼트, 보도블록에 맞아 2주간의 상해	다발성좌상 진단 2주	29,800	29,800
50	09-8-4	DJ	차체공장에서 복지동건물 진입 작전중 볼트, 보도블록에 맞아 허벅지 등 타박상	족부타박, 진단 2주	18,000	18,000
51	09-8-4	DK	로디우스 옥상에서 복지동 옥상으로 진입 중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에 손등을 맞아 손등골절	손허리뼈골 절, 진단 4주	29,100	29,100
52	09-8-4	DL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의해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불이 붙어 소방서가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맞아 좌측발 타박상	좌측 족관 절 부열상 진단 2주	49,400	49,400
53	09-8-5	R	조립공장 진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과 쇠파이프에 맞아 약지손가락 힘줄 손상	좌수지신 전근 파열 진단 3주	192,860	192,860
54	09-8-5	S	조립공장 옥상 진입작전 중 시위대가 던진 쇠파이프에 좌측발등을 찍혀 발가락 골절 부상	좌측 중족 골, 분쇄골 절 진단 4 주	206,880	206,880
55	09-8-5	DM	MIP공장 옥상 에서 복지동 연결통로 진입을 시도하던중 시위대가 던진 철근에 맞아 눈부위 찰과상	안면부 타 박상	15,600	15,600
56	09-8-5	DN	로디우스 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옥상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중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맞아 우측 손등 타박상	우측팔 타박상	85,500	85,500
57	09-8-5	DO	로디우스 옥상진입작전을 위해 사다리를 들고 접근 중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와 벽돌 등에 맞아 팔부위 등 타박상	팔다발성 좌상, 진단 2주	45,360	45,360
58	09-8-5	DP	로디우스 옥상진입작전을 위해 사다리를 들고 접근 중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와 벽돌에 맞아 치아가 파절되는 부상	치아파절, 보철적 수 복이 요구	292,400	292,400
59	09-8-5	DQ	도장공장 시위대를 진압을 위해 사다리를 들고 이동중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에 오른팔을 맞아 근육손상	아래팔 부위 편부 위 손상	6,800	6,800
60	09-8-5	DR	로디우스 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연결통로 진입작전 중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왼손등을 맞아 7바늘 봉합	손가락 열창	25,800	25,800
61	09-8-5	DS	로디우스 공장 옥상에서 시위대를진압하기 위해 이동중 시위대가 뿌려놓은 기름에 미	대퇴골 좌 상	49,700	49,7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고려저 타박상			
62	09-8-5	AY	로디우스 옥상진입작전을 위해 사다리를 들고 접근 중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와 벽돌 등에 수회 맞아 전신타박상	전신 타박상	32,500	0
63	09-8-5	DT	로디우스 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연결통로 진압작전 중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오른쪽 허벅지를 맞아 타박상	허벅지 타박상	43,000	43,000
64	09-8-5	DU	로디우스 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연결통로 진압작전 중 시위대가 던진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에 좌측 종아리 화상	좌측종아리 화상	52,200	52,200
65	09-8-5	DV	카이런 공장 옥상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진압작전 중 시위대의 휘두른 쇠파이프로 수습회를 맞아 전신타박상	경추염좌, 진단 2주	20,600	20,600
66	09-8-5	DW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의해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불이 붙어 소방서가 접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에 손등을 맞아 손등뼈 골절 부상	좌측 수부 중수골분쇄 골절, 진단 8주	87,300	87,300
67	09-8-4	DX	조립공장 옥상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시위대가 던진 자동차 휠, 볼트, 보도블록 등에 맞아 어깨 힘줄 손상, 목뼈 염좌	우측회전근 파열, 진단 4주	25,500	25,500
68	09-8-4	BZ	조립공장 옥상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시위대가 던진 자동차 휠, 볼트, 보도블록 등에 맞아 어깨 힘줄 손상, 무릎 타박상	어깨회전근 파열, 진단 4주	51,700	51,700
69	09-8-4	DY	조립공장 옥상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시위대가 던진 자동차 휠, 볼트, 보도블록 등에 맞아 우측인대가 파열되고 전신 타박상	우측수지인대파열, 진단 3주	25,500	25,500
70	09-8-5	DZ	조립공장 옥상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시위대가 던진 자동차 휠, 볼트, 보도블록 등에 맞아 전신 타박상	목뼈염좌, 진단 3주	7,400	7,400
71	09-8-4	EA	체어맨 조립공장 측면에서 점거농성을 진압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던중 시위대가 던진돌에 손목을 맞아 손목뼈 골절	손목뼈 골절	32,500	32,500
72	09-6-23	AN	사측과 노조 측의 충돌을 막는 과정에서 왼쪽 손목 골절	좌수부주상골 골절	3,975,520	3,975,520
73	09-6-25	EB	C 노조원들의 불법 시위를 막기 위해 몸싸	발가락 타	74,590	74,5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용 도중 시위대로부터 발을 밟혀 왼쪽 엄지 발톱 상해	박상, 진단 3주		
74	09-6-26	BC	시위대 200여명이 불법시위 하고 있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이동중 시위대가 쓰러뜨려 놓은 철조망에 걸려 넘어지면서 후방심자인대 손상	우측 슬관절심자 인대파열진단 6주	944,450	0
75	09-6-26	EC	기숙사 정문을 지키고 있던 중 시위대의 기습적인 시위로 몸싸움도중 시위대에게 왼쪽 발을 밟혀 엄지발가락 발톱이 깨지는 부상	내향성 발톱 일부절재	99,300	99,300
76	09-6-26	ED	기숙사 정문을 지키고 있던 중 시위대의 기습적인 시위로 몸싸움도중 시위대에게 왼쪽 발을 밟혀 엄지발가락 발톱이 갈라지는 부상	좌측 엄지 타박상	40,650	40,650
77	09-6-27	BD	정문 앞에서 시위하던 시위대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설치한 스피커에 팔목을 부딪혀 타박상	손목 및 손 타박상, 진단2주	43,960	0
78	09-7-16	AK	C 노조원 1명을 검거하여 호송차로 이동중 시위대 8-9명이 달려와 방석모를 벗기고 집단 폭행하여 머리 8바늘 봉합수술	뇌진탕, 대뇌열상, 진단 2주	85,190	85,190
79	09-7-20	EE	C 내부에서 상황근무중 시위대에서 발사한 못에 발바닥이 찢려 부상	좌측족부 천공성 상처	76,520	76,520
80	09-7-21	EF	시위진압을 위해 남문 앞에서 근무중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에 맞아 좌측 쇄골 타박상	전흉부 타박상	47,700	47,700
81	09-7-21	EG	프레스 공장 입구 쪽 방향에서 내부로 진입하던중 도장공장 옥상에 있던 노조원들이 발사한 볼트에 맞아 우측 눈 부상	우안 전방출혈, 결막하 출혈	217,350	217,350
82	09-7-21	EH	프레스 공장 진입작전 중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 파편에 맞아 좌측 팔 찰과상	좌측 주관절 열상	17,020	17,020
83	09-7-21	EI	프레스 공장 진입작전 중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우측어깨와 우측 손 타박	우측견관절 염좌, 진단 2주	14,540	14,540
84	09-7-22	AA	정문에서 시위대가 농성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에서 발사한 볼트에 맞아 찰과상	구순부 열창	18,900	18,860
85	09-7-22	EJ	정문에서 시위대가 농성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에서 발사한 볼트에 맞아 우측 팔 찰과상	좌측팔 주관절부 열창	16,110	16,1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86	09-7-22	EK	정문 안쪽 시위대 100여명이 정문 쪽으로 진출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도장 공장 옥상에서 발사한 볼트에 맞아 우측 팔 타박상	손가락 좌 상	42,040	42,040
87	09-7-22	EL	시위대 70여명이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에 맞아 왼쪽 가벼운 화상	좌측팔 주 관절부 좌 상	10,000	10,000
88	09-7-22	AB	시위대 70여명이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하는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에 맞아 좌측 팔 타박상	좌측팔 주 관절부 찰 과상	16,300	16,300
89	09-7-22	EM	시위대 상황 근무중 도장공장 옥상에서 발사한 볼트에 맞아 우측발목 타박상	좌측족관절 염좌	14,600	14,600
90	09-7-22	EN	C 상황근무 중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에 맞아 발등 타박상	우측족부좌 상, 진단2 주	12,400	12,400
91	09-7-24	E0	프레스 공장 입구 쪽 방향에서 내부로 진입하던중 도장공장 옥상에 있던 노조원들이 발사한 볼트에 맞아 좌측발등 타박상	좌측족부좌 상, 진단 2주	14,100	14,100
92	09-7-25	AH	AC노총 시위대가 C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 하던중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에 맞아 좌측 손 등 골절	좌측 손등 골절	101,300	101,300
93	09-7-26	BE	시위대의 화염병 공격이있어 이에 대응하기위해 소화기를 가지러 가던 중 넘어져 좌측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진단 6주	362,500	0
94	09-8-4	EP	도장공장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 앞 유리를 그물망으로 보호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좌측발등 타박상	좌측발 타 박상	40,100	25,100
95	09-8-4	AS	도장공장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 앞 유리를 그물망으로 보호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맞아 우측발등 타박상	우측발 타 박상	72,160	57,160
96	09-8-4	AT	도장공장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 앞 유리를 그물망으로 보호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맞아 우측발등 타박상	우측발 타 박상	73,800	58,800
97	09-8-4	AM	정문 앞에서 교통정리 중 D노조 부위원장으로 부터 경적을 분다는 이유로 안면부 폭행	안면부좌 상, 진단 2주	85,000	85,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98	09-8-4	BF	평택 올류센터에서 에어매트를 차량에 옮겨 실는 과정에서 차량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	두피열창, 진단 10일	43,720	0
99	09-8-4	EQ	조립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다리를 옮기던중 시위대가 던진 벽돌과 볼트에 맞아 왼쪽 팔꿈치 부상	좌수 팔꿈치 타박상	44,200	44,200
100	09-8-4	AU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을 보호하며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에 머리를 맞아 부상	우측두피손상, 진단 2주	65,800	64,300
101	09-8-4	AV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을 보호하며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에 왼쪽 갈비뼈를 맞아 부상	흉곽타박상, 진단 2주	32,200	30,700
102	09-8-5	ER	로디우스 공장에서 복지동 옥상 진입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던 중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우측 팔 부위를 맞아 타박상	팔꿈치 타박상	52,300	52,300
103	09-8-5	ES	로디우스 공장에서 복지동 옥상 진입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던 중 시위대가 던진 사체 표창에 맞아 우측 팔부위 타박상	우측무릎 타박상	41,900	41,900
104	09-8-5	ET	로디우스 공장에서 복지동 옥상 진입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던 중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에 맞아 팔목 타박상	아래팔 타박상	39,800	39,800
105	09-8-5	EU	로디우스 공장에서 복지동 옥상 진입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던 중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맞아 새끼손가락 골절	손가락파쇄성 골절	50,640	50,640
106	09-8-5	EV	로디우스 공장에서 복지동 옥상 진입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던 중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에 맞아 우측 엄지 발가락을 맞아 타박상	발가락 타박상	42,100	42,100
107	09-8-5	EW	로디우스 공장에서 복지동 옥상 진입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던 중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에 맞아 우측 손가락 타박상	손가락 타박상	40,500	40,500
108	09-8-5	EX	로디우스 공장에서 복지동 옥상 진입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던 중 시위대가 발사한 볼트에 안면부를 맞아 타박상	턱 타박상	52,900	52,900
109	09-8-5	EY	로디우스 공장에서 복지동 옥상 진입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던 중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맞아 왼쪽 무릎 타박상	무릎 타박상	40,500	40,500
110	09-8-5	EZ	로디우스 공장에서 복지동 옥상 진입을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던 중 시위대가 던진 벽	무릎 타박상 피하혈	51,200	51,2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돌에 맞아 우측 무릎과 허벅지 등 타박상	종		
111	09-8-5	BN	조립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다리를 옮기던중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맞아 왼쪽 팔 2도화상	손목, 어깨 등 2도화상	52,700	52,700
112	09-8-5	FA	조립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다리를 옮기던 중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맞아 왼쪽팔 골절상	좌측전완부 요골 골절, 진단 6주	103,800	103,800
113	09-8-5	FB	조립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다리를 옮기던중 시위대가 던진 돌에 우측 무릎을 맞아 타박상	우측대퇴부 좌상, 진단 3주	90,300	90,300
114	09-8-5	FC	조립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다리를 옮기던중 시위대가 던진 자동차 휠에 발뼘꿈치를 가격 당하여 아킬레스건 손상	우측발 아킬레스건 손상 진단 3주	1,167,670	1,167,670
115	09-8-5	FD	조립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다리를 옮기던중 시위대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찰과상	두부열창	54,560	54,560
116	09-8-5	FE	조립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다리를 옮기던중 시위대가 던진 돌에 좌측 발목 등을 맞아 타박상	발목타박상, 진단 2주	42,400	42,400
117	09-8-5	FF	조립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다리를 옮기던중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왼손 엄지손가락 찰과상	손가락 열상	54,700	54,700
118	09-8-5	FG	조립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다리를 옮기던중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턱 부위를 맞아 타박상	우측하악골 타박상	44,900	44,900
119	09-8-5	FH	조립공장 옥상에서 복지동 건물 옥상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다리를 옮기던중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맞아 우측어깨 타박상	팔 이음뼈 염좌	22,200	22,200
120	09-8-5	FI	조립공장 진입작전 도중 시위대가 던진 돌에 턱을 맞아 5바늘 봉합	볼 및 아래턱 열창	63,860	63,860
121	09-8-5	FJ	C 정문 앞에서 발생한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방패에 치아파절	경상(치아 미세파절)	4,300	4,300
122	09-8-5	B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을 보호하며 화재를 진압하는	좌측주관절 부좌상,	30,500	15,5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왼쪽 팔 부상	진단 2주		
				합계	16,430,640	14,402,3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 제2 목록(차량피해)

(단위: 원)

연번	일시	소속	차량번호	차량종류	손괴내용	주장된 손해액	인정된 손해액
1	09-7-20	5기동대	FK	지휘차	본넷트 손상	-	0
2	09-7-21	기동단	FL	살수	유리창 등 8곳 파손	50,000	0
3	09-7-21	기동단	FM	살수	크레인 컨트롤 등 16곳 파손	50,000	0
4	09-7-21	평택서방 순대	FN	버스	유리창 파손 1	66,000	66,000
5	09-7-22	안양서	F0	버스	유리창 파손 1	77,000	0
6	09-7-22	705중대	FP	버스	승강구 유리 파손 1	50,000	0
7	09-7-22	11중대	FQ	버스	앞 라이트 1	65,000	65,000
8	09-7-22	11중대	FR	버스	유리창 파손 2	50,000	0
9	09-7-23	안양방순 대	FS	버스	유리창 파손 1	77,000	77,000
10	09-7-23	6중대	FT	버스	유리창 파손 1	50,000	0
11	09-7-24	13중대	FU	승합	유리창 파손 1	50,000	0
12	09-7-24	13중대	FV	버스	유리창 파손 1	50,000	0
13	09-7-25	기순대	FW	이륜	경광등, 무전기함 등 3곳 파손	-	0
14	09-7-25	기순대	FX	이륜	경광등, 무전기함 등 3곳 파손	-	0
15	09-7-25	평택서	FY	순찰차	유리창 등 3곳 파손	-	0
16	09-7-25	광명서	FZ	승용	유리창 파손 1	50,000	0
17	09-7-25	의정부방 순대	GA	버스	유리창 파손 1	363,000	363,000
18	09-7-25	4기동대	GB	버스	유리창 파손 1	88,000	88,000
19	09-7-25	605전경대	GC	버스	유리창 파손 1	50,000	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20	09-8-2	14중대	GD	버스	유리창 파손 1	50,000	0
21	09-8-4	부천남부 서	GE	승합	본넷 등 5곳 파손	-	0
22	09-8-5	수원남부 서	GF	승합	유리창 파손 1	-	0
23	09-8-5	5기동대	GG	버스	운전석유리 2	-	0
					합계	1,236,000	659,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 제3 목록(진압장비등피해)

(단위: 원)

구분	일시	소유자	물품명	수량	손해내용	주장된 손해액	안정된 손해액
1	09-7-16	4기동대	방석모	6	파손	138,000	0
			보호복	2	파손	684,682	0
			휴대용소화기	1	파손	12,000	0
2	09-7-18	299방순대	방석모	1	파손	23,000	0
3	09-7-20	299방순대	방석모	1	파손	23,000	0
4	09-7-21	126전경대	방석모	1	파손	23,000	0
5	09-7-22	299방순대	안전방패	2	파손	173,800	0
			방석모	3	파손	69,000	0
6	09-7-22	1중대	안전방패	1	파손	86,900	0
			방석모	11	파손	253,000	0
7	09-7-22	129방순대	휴대용소화기	8	파손	96,000	0
8		5기동대	휴대용소화기	9	파손	108,000	0
9	09-7-25	4기동대	채증카메라	1	파손	350,000	329,000
			방석모	6	파손	138,000	0
			보호복	2	파손	684,682	0
			휴대용소화기	4	파손	48,000	0
10	09-7-25	139방순대	방석모	1	파손	23,000	0
11	09-7-25	2기동대	캡사이신	1	피탈	35,000	0
12	09-7-25	2기동대	캡사이신	1	파손	5,000	0
13	09-7-27	605전경대	방석모	10	파손	230,000	0
14	09-7-27	705전경대	방패	1	파손	86,900	0
			방석모	1	파손	23,000	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15	09-8-5	3기동대	방패	1	파손	86,900	0
			전자총격기탄	1	파손	30,000	0
16	09-8-5	279방순대	방석모	1	파손	23,000	0
			방패	1	파손	86,900	0
17	09-8-5	149방순대	방석모	6	파손	138,000	0
			진압복	2	파손	700,000	0
			방패	1	파손	86,900	0
18	09-8-5	14중대	방패	3	파손	260,700	0
19	09-8-5	705전경대	방패	2	파손	173,800	0
			방석모	5	파손	69,000	0
			방영간이진압복	3	파손	1,050,000	0
			진압봉	4	파손	39,356	0
					합계	6,035,520	329,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 제4 목록(휴대용무전기피해)

(단위: 원)

연번	일시	소속	사용자	대상	손해내용	주장된 손해액	인정된 손해액
1	2009-06-25	609전경대	경위 GH	VHF 휴대용무전기	피탈	289,000	0
2	2009-06-26	평택 정보과	경정 GI	TRS 휴대용무전기	피탈	1,221,660	0
3	2009-06-27	수원중부방순대	수경 GJ	TRS 휴대용무전기	피탈	1,221,660	0
4	2009-06-27	605전경대	수경 GK	TRS 휴대용무전기	피탈	1,221,660	0
5	2009-07-21	평택서 형사과	경장 GL	TRS 휴대용무전기	피탈	1,221,660	610,830
6	2009-07-22	기동 11중대	상경 GM	VHF 무선망수신기	볼트에 파손	145,000	0
7	2009-07-22	기동 1중대	수경 GN	VHF 휴대용무전기	볼트에 파손	289,000	0
8	2009-07-22	807전경대	상경 GO	VHF 휴대용무전기	피탈	289,000	144,500
9	2009-07-22	6기동대	경위 GP	TRS 휴대용무전기	피탈	1,221,660	610,830
10	2009-07-22	6기동대	순경 CO	VHF 휴대용무전기	피탈	289,000	144,500
11	2009-07-22	6기동대	경위 EN	TRS 휴대용무전기	피탈	1,221,660	610,830
12	2009-07-22	6기동대	순경 X	VHF 무선망수신기	피탈	145,000	72,500
13	2009-07-25	경남청5중대	이경 GQ	VHF휴대용무전기	피탈	289,000	0
14	2009-08-02	3기동대	경위 GR	TRS 휴대용무전기	피탈	1,221,660	0
15	2009-08-02	5기동대	순경 GS	VHF 무선망수신기	피탈	145,000	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합계		10,431,620	2,193,990
--	--	--	--	----	--	------------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 제5 목록(헬기 피해)

(단위: 원)

연번	일시	소속	기종	피해내용	정비내역	주장된 손해액	인정된 손해액
1	2009-08-04	서울청	MI-172	주날개	부품교환	490,715,720	490,715,720
				꼬리날개			
2	2009-08-04	인천청	Bell-412 (952호)	주날개	부품교환 등	120,762,998	120,762,998
				조종석 유리			
				SWASH PLATE & SUPPORT ASB 412-08-31 수행		2,825,000	0
3	2009-08-04	경기청	Bell-412 (957호)	주날개	수리(국내)	2,825,000	2,825,000
				주날개	추가수리(해외)	67,344,012	0
					합계	684,472,730	614,303,71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12-26

## 제6 목록(기중기 피해)

(단위: 원)

연번	수량	주장된 손해액					인정된 손해액
		기존수리비	항후수리비	휴업손해	책임제한	소계(관련 사건 판결서상 금액)	
1	3	87,480,181	607,866,934	233,415,800	80%	743,010,332	743,010,332